

# 변경대비표

**[신탁계약서]**

1. 펀드명 : 하나 UBS 클래스원신증 MMF(K-5 호)

**2. 주요 변경내용**
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7.5.8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 1.15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4.1 시행)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2 년 04 월 01 일

**4. 대비표**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<b>제 4 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b>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<b>제 6 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</b>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

수익증권의 총좌수)	반영(2019. 9.16 시행)	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.	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<b>수익권 (법 제 189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수익증권"이라 한다)</b> 의 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.
제 9 조(수익권의 분할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표시한다.</u>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.</u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b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b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「 <b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</b> 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b>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</b> 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
제 14 조(수익자명부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		<p>③(생략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~2.(생략)</p> <p>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 15 조( 자산운용 지시 등)</b>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</p>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b>한도로 하여</b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<b>제 19 조( 운용 및 투자 제한)</b></p>	<p>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4.1 시행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6. (생략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6. (현행과 같음)</p>

		7.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75 일</u> 을 초과하는 행위 8.~9. (생략)	7.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60 일</u> 을 초과하는 행위 8.~9. (현행과 같음)
<b>제 20 조(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)</b>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7.5.8 시행)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 19 조제 1 항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<u>처분이 불가능한</u>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 19 조제 1 항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<u>처분이 불가능하거나</u> <u>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</u> <u>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</u> <u>불가능한</u>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<b>제 32 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~3.(생략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~3.(현행과 같음)
<b>제 35 조(상환금등의 지급)</b>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<b>제 39 조(보수)</b>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6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~2.(생략)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6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~2.(현행과 같음)

<p><b>제 42 조( 기타 운용비용 등)</b></p>	<p>문구 명확화</p>	<p>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증권 등 자산의 <u>예탁</u> 및 결제비용</p> <p>3.~9. (생략)</p>	<p>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증권 등 자산의 <u>예탁비용 (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)</u> 및 결제비용</p> <p>3.~9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45 조(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)</b>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</p>	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5.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b>전자등록기관</b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 49 조( 금전차입 등의 제한)</b>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)</p>	<p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</p>	<p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</p>

	시행)	<p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<b>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</b></p>
<p><b>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	<p>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 1.15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</p>	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.~5. (생략)</p> <p>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</p>	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<u>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</p>

		<p>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</p> <p>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</p> <p>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
부칙	-	(신설)	<p>부 칙</p> <p><b>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2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</b></p>

[ 간이투자설명서 ]

1. 펀드명 :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(K-5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2 년 04 월 01 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 - 투자비용	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-	<u>정보 업데이트</u>  <u>총보수비용 추가</u>
요약정보 - 투자실적추 이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운용전문인 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


[ 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 ]

1. 펀드명 : 하나 UBS 클래스원신증 MMF(K-5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7.5.8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 1.15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4.1 시행)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2 년 04 월 01 일

4. 대비표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문서전반 (해당시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<b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(신설)	사. 고난도 금융상품: 해당사항 없음
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정보 업데이트	-	<b>2022 년 04 월 01 일:</b>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

		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5. 가. 운용전문인 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8.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7.5.8 시행)	-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: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	-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: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<b>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</b>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
8. 나. 투자제한	금융투자업규 정 개정사항 반영 (2022.4.1 시행)	기타 투자제한 -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75 일</u> 을 초과하는 행위	기타 투자제한 -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60 일</u> 을 초과하는 행위
8. 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7.5.8 시행)	기타 투자제한 -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, 단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<u>처분이 불가능한</u>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	기타 투자제한 -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, 단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<b>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</b>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
13. 나.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기갱신  문구명확화	-  ※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(생략)	<u>정보 업데이트</u>  ※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(현행과 같음)

13.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		1.(생략) 2.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~9.(생략)	1.(현행과 같음) 2. 증권 등 자산의 <u>예탁비용(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)</u> 및 결제비용 3.~9.(현행과 같음)
<b>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<b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백 만원)  라. 운용자산규 모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3. 가. (3) 의무와 책임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신탁업자의 확인사항 (생략) (신설)	신탁업자의 확인사항 (현행과 같음) <u>7.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
<b>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
<p><b>2. 가. 의무해지</b>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 9. 28 시행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(생략)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(현행과 같음)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<b>다만,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
<p><b>3.가.(2)자산 운용보고서</b>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9.01.15 시행)</p>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9. 9.16 시행)</p> <p>기재사항 보완</p>	<p>1)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2)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(생략)</p>	<p>1)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b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b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2)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(현행과 같음)</p>

		(신설)	· <u>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</u>
<b>3.나.(2)수시 공시</b>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11.11.5 시행)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10.21 시행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ubshana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1)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)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)~11)(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ubshana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1)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<u>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 2)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 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 ) 3)~11)(현행과 같음)